| 의 안 벽 | 제 1023 호 |    |   |   |   |
|-------|----------|----|---|---|---|
| 의     | 결        | لخ | 1 | 월 | 일 |
| 연 월   | 일        | (> | 테 | 회 | ) |

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| 제 안 자 | 의회운영위원장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안연월일 | 2022년 3월 16일 |

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 1023 제안연월일 : 2022년 3월 16일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○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 의장·부의장의 법정임기(2년) 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○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하고 사무처장이 의원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(안 제8조의3)

3. 규칙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 : 붙임

○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
O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
O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최초집회) ①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, 집회일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

② 사무처장은 의원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중 "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"을 "법 제72조제1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 선 설> 제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   | 제3조의2(최초집회) ①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「지방자 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4 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 하되, 집회일은 천재지변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 ② 사무처장은 의원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. 제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 |
|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<u>「지방자치법」(이하</u> "법"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③ (생 략) | 과 같음) ②  |

# 관계 법령

##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54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 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 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  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  -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